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

제출년월일 : 2026. 10. 2.
제 출 자 : 송 파 구 청 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내용 시행(2026. 7. 22.)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를 확립하고, 기존 조문 내용 중 통일되지 않은 명칭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공연법」 상 신고 대상인 공연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상 심의 대상인 축제와 혼동될 수 있어 일부 호 수정(안 제14조제2항제3호)

나.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중 통일되지 않은 명칭 수정(안 제19조제2항, 안제20조)

다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의2 및 제15조 개정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조항 신설(안 제21조의2)

라. 재난발생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업무 중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·소통에 관한 사항 반영 (안 제27조제1항제2호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의2, 제15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관련부서 사전협의: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,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보육과), 규제사전심사(기획예산과)

라. 기　　타

(1) 개정문안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, 관계법규 : 별첨

(2) 입법예고: 2026. 9. 9.~ 9. 29. (20일간)
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3호 중 “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)”을 “안전관리계획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협력관”을 “총괄조정관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지원협력관”을 “총괄조정관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(이하 “구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,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(이하 “시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구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, 구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·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지원센터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⑤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생 략)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 략) 3.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)에 관한 협의·조정 4. (생 략) ③ ~ ⑦ (생 략)	제14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 안전관리계획에 -----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(대책본부의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차장, 지원협력관, 통제관 및 담당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 ③·④ (생 략)	제19조(대책본부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총괄조정관-----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직무대행)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, 지원협력관,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	제20조(직무대행) ---------- 총괄조정관 ----------
<신 설>	제21조의2(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

	에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(이하 “구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,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(이하 “시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구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, 구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·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지원센터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 ⑤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제27조(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) ①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2. (생 략) <신 설>	제27조(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

	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□ 관련법규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6. 7. 22.] [법률 제21313호, 2026. 1. 21., 일부개정]

제14조의2(수습지원단 파견 등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·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.

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·구급·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·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.

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지원실시기관”이라 한다)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,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, 소속 직원의 파견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

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.

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.

④ 중앙대책본부장(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)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,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(이유)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 조례안은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로 인한 별도의 예산의 증·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- 작성자 : 주 무 관 행정7급 김동빈
- 검토자 : 재난관리팀장 행정6급 안성진
- 결재자 : 도시안전과장 행정5급 엄귀대